

제338회 임시회  
2015. 3. 13.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
# 심 사 보 고 서

2015. 3. 13.(금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2월 23일
- 회부일자 : 2015년 2월 24일

다. 상정일자 : 2015년 3월 5일

-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장희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정부조직법」 일부개정으로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정보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개정  
(안 제4조제3항, 제10조제1항, 제17조)

- 정보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
  -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사유 및 기피신청, 회피 (안 제6조의2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# 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맹정호)

- 본 조례안은 「정부조직법」 일부개정(2014. 11. 19.)으로 “행정안전부”가 “행정자치부”로 조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,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한편, 본 조례안은 ‘정보화위원회’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제척·기피신청·회피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안 제6조의2 제1항에서는
  -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·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,
  -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,
  -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의2 제2항에서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6조의2 제3항에서는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내용 및 법리적으로 타당함.
- 다만, 최근 5년간 ‘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’ 개최 내용을 보면 위원회 심의안건 내용의 범위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‘충청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’과 1년 단위로 수립하는 ‘시행계획’의 심의에 국한하고 있어 위원회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, 동 조례 제6조(정보화위원회의 설치)제1항제3호 “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” 심의를 대비하여 제척·기피·회피의 규정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, 제17조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 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 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·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3.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                      ① ~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③ 도지사는 <u>행정안전부장관</u>이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조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③ -----<u>행정자치부장관</u>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<u>제6조의2(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<u>1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·단체가 심의 대상안전에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</u></p> <p><u>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전의 당사자인 경우</u></p> <p><u>3. 그 밖에 심의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<u>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전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</u></p>

제10조(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등)

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7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,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“웹표준”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등)

① -----  
-----행정자치부장관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행정자치부장관-----  
-----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국가정보화기본법

- 제4조(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,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□ 충청북도지역정보화조례

- 제4조(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되,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
  2.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
  3.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
  4.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·활용
  5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
  6.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
  7.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
  8. 정보격차 해소, 인터넷 중독 예방·해소



9. 재원의 조달 및 운용

10.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**행정안전부장관**이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**행정안전부장관**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,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**행정안전부장관**이 고시하는 “웹표준”을 준수하여야 한다.